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배제 유예〉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12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배제 유예	2
※ 참고자료	
1.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현황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8.

3. 회부연월일 : 2025.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

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기업 규모 확대로 기업 인정 기준이나 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배제 유예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9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¹⁾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법률 제2119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중증장애인으로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본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개정안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1인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²⁾³⁾할 수 있는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5호, 2025. 12. 2., 일부개정]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유형: 업무보조형(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2. 제2유형: 의사소통형(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
3. 제3유형: 경영지도형(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
2. 여성 중증장애경제인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경제인이 제5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 폐업, 영업정지, 도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수탁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3조(지원 대상) 센터는 중증장애인으로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업무지원 등 선정 취소 및 회수) ① 센터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영 제7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업무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지침」(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부규정)

개정안의 취지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제3조(지원 대상) ① 센터는 고시 제3조에 따른 중증장애경제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선정한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 해당 여부
2. 기업 경영활동의 지속성 및 사업 실체
3. 장애로 인한 기업 경영활동 수행의 제약 정도
4.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필요성 및 활용 가능성

② 센터는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신청·제공대상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자격상실) ① 센터는 고시 제14조 및 영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제공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대상자가 업무지원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금 수령에 가담한 경우
- ② 센터는 고시 제14조 및 영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제공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사업취지 또는 제공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중증장애경제인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용(본인부담금) 부담을 거부하거나, 본인부담금 미납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 폐업, 영업정지, 도산 등 사정 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4. 업무지원인에게 범법행위 및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거나 요구한 경우
5. 제공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타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자료제출·현장점검·사후관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경영지도형 및 의사소통형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8.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기업 요건을 상실한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부터 1년간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공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3. 장애등록의 취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국외체류
6. 6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7. 60일 이상 연속하여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⑤ 센터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취소 또는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즉시 해당 제공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공대상자는 사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상자로 간주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업무지원인의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경제인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신규 창업자나 고용 창출 기업과의 지원 형평성, 장애인기업의 규모 확대 기회, 유예제도를 통해 업무지원인 제도의 본래 취지를 해하는 제도의 악용⁴⁾ 우려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경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한 「중소기업기본법」⁵⁾의 입법례, 소상공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

4) 예를 들어, 중증장애경제인이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하여 다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인 지위를 상실할 경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⁶⁾의 입법례 등이 있음.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2026년 6월 3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개정안 시행 전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 지원의 연속성 제고라는 법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바, 적용례⁷⁾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한정된 재원과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까지는 지원이 중단되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수정의견>

제2조(적용례) 안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지원인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⁸⁾.

기획예산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서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8)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
③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u>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u>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본다.	③ <u>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u>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u>해당 연도 말까지는</u>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본다.

【참고자료】

1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 *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22.9.6.) → 법안 가결('23.5.25.) → 법안 시행('23.12.21.)
- (지원내용)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무보조, 의사소통, 경영지도 등 서비스 제공
- ('26년 예산) 17.8억원(115개사 내외)
- (시행주체)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사례

업체명	으○○○원	대표자	장○기	장애유형	시각
▶ 애로사항 - 시각장애인으로서, PC 활용이 어려워 안마 바우처 전산 수행 업무, 단말기 조작 곤란 - 안마 서비스 중 고객응대가 어렵고, 업무 전화 및 고객 예약 응대 서비스 처리 미숙 -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블로그 등을 통한 안마원 홍보활동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시각 장애로 PC활용이 곤란하여, 안마원 홍보 활동 불가 ▶ 업무지원인 서비스 내용 - 안마 바우처 전산처리,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활용한 홍보, 서류정리, 고객상담 - 안마원 장부 정리, 고객 연락처 및 예약정보 관리, 안마원 홍보 및 전단지 작성 - 안마 서비스 중 업무 전화 응대 및 고객 예약 서비스 관리, 방문 고객 응대, 만족도 관리 ▶ 지원성과 - 고객만족도 제고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를 통해 전년대비 매출액 113.3% 향상* * '23년 150백만원 → '24년 320백만원					